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

의안 번호	1320
----------	------

2023. 12. 18.  
주택공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0. 13. 김춘곤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. 10. 23.
-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3. 12. 18. 상정·의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 (김춘곤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5조제1항제1호의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약칭을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함.(안 제2조의2제1항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오정균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을 ‘법’으로 약칭하는 조문의 위치를 현행 제5조에서 제2조의2로 변경하고,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#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Ⅴ. 토론요지 : 없음

### Ⅵ. 수정안의 요지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전부개정(2018. 7. 19.) 사항을 반영하여, 인용 조항 번호를 수정함.

### Ⅶ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### 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2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12. 18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전부개정(2018. 7. 19.) 사항을 반영하여, 인용 조항 번호를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5조제1항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함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

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함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 제5호에서 "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</p> <p>14.~16. (생략)</p> <p>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"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"라 한다)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</p> <p>2.~6. (생략)</p>	<p>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.)</p> <p>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<u>사업시행인가</u>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</p> <p>14.~16. (생략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<u>제7조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</p> <p>2.~6. (생략)</p>	<p>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사업시행계획인가</u> 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4.~16. (생략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제11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~6. (생략)</p>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법 제7조제6항”을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0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“다만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”를 “다만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 전단 중 “준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를 “준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“ 제21조제1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”으로 하고,

제19조제2항 중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”를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

4. ~ 12. (생략)

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 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

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

15. 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. 이 경우,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6. (생략)

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

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-----

4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-----  
----- 사업  
시행계획인가 -----  
-----  
--

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 
-----  
-----

15. 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6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

에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”라 한다)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2. ~ 4. (생략)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준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

6. (생략)

제10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) ① (생략)

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“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---  
-----  
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(생략)

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2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-----  
-----  
----.